

# 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3년 2월 21일

## 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달러표시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UH[채권]

##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5년 11월 25일

## 3. 정정 내용 :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표준편차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
## 4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 주1)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,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(156주)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. 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)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<b>6.89%</b> 입니다. 주3)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주4)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수 있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 주1)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,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(156주)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동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. 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)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<b>7.53%</b> 입니다. 주3)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주4)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수 있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								
	습니다.	습니다.							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</p> <p>&lt;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&gt;(단위: 원)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<b>업데이트</b></p> <p>&lt;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&gt;(단위: 원)</p> <p><b>업데이트</b></p>							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</p> <p>1)~2) (생략)</p> <p>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	<p>나. 과세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</p> <p>1)~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86 629 821 188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86 629 488 667">구분</th> <th data-bbox="488 629 821 667"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86 667 488 1014">납입 요건</td> <td data-bbox="488 667 821 1014"> <p>가입기간 5년 이상, <b>연 1,800만원 한도</b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b>(추 가)</b>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86 1014 488 1720">세액 공제</td> <td data-bbox="488 1014 821 1720"> <p><b>(추 가)</b>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2%</b></p> <p>· 종합소득 <b>4천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5%</b></p> <p>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p><b>(추 가)</b></p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86 1720 488 1886">연금수령 시 과세</td> <td data-bbox="488 1720 821 1886"> 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<b>연 1,800만원 한도</b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b>(추 가)</b></p>	세액 공제	<p><b>(추 가)</b>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2%</b></p> <p>· 종합소득 <b>4천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5%</b></p> <p>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p><b>(추 가)</b></p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	연금수령 시 과세	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71 629 1307 188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871 629 973 667">구분</th> <th data-bbox="973 629 1307 667"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871 667 973 1014">납입 요건</td> <td data-bbox="973 667 1307 1014"> <p>가입기간 5년 이상 <b>(삭 제)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b>1. 연간 1,800만원</b></p> <p><b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 전환금액" 이라 한다.)</b>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71 1014 973 1720">세액 공제</td> <td data-bbox="973 1014 1307 1720"> 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p> <p><b>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<b>13.2%</b>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· 종합소득 <b>4,500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6.5%</b>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<b>(삭 제)</b></p> <p><b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</b></p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71 1720 973 1886">연금수령 시 과세</td> <td data-bbox="973 1720 1307 1886"> 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 <b>(삭 제)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b>1. 연간 1,800만원</b></p> <p><b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 전환금액" 이라 한다.)</b></p>	세액 공제	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p> <p><b>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<b>13.2%</b>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· 종합소득 <b>4,500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6.5%</b>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<b>(삭 제)</b></p> <p><b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</b></p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	연금수령 시 과세	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</p>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
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<b>연 1,800만원 한도</b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b>(추 가)</b></p>																	
세액 공제	<p><b>(추 가)</b></p> 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2%</b></p> <p>· 종합소득 <b>4천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5%</b></p> <p>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p><b>(추 가)</b></p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																	
연금수령 시 과세	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</p>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
납입 요건	<p>가입기간 5년 이상 <b>(삭 제)</b></p> 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b>1. 연간 1,800만원</b></p> <p><b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 전환금액" 이라 한다.)</b></p>																	
세액 공제	<p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p> <p><b>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b> 이내 세액공제 <b>13.2%</b>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· 종합소득 <b>4,500만원</b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<b>16.5%</b>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<b>(삭 제)</b></p> <p><b>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</b></p> 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																	
연금수령 시 과세	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</p> <p>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</p>																	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			<p>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</p> <p>2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</p>
	<p>분리과세 한도</p>	<p>연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, 퇴직소득 제외)</p>	<p>연금소득 분리과세</p>	<p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</p> <p>1.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</p> <p>2. 의료 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</p> <p>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</p> <p>단, 연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)</p>
	<p>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유</p>	<p>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	<p>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유</p>	<p>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
	<p>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%(또는 15%) 세액 공제 (추 가)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추 가)</p>		<p>(삭 제)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단,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2023년1월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(<a href="https://100lifeplan.fst">https://100lifeplan.fst</a>)</p>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	s.or.kr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가. 요약재무정보 (신 설)	가. 요약재무정보 [기업공시서식개정 내용 반영] - 주식의 매매회전을 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